붙임 2-1

2024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ㅇ 기본급

(단위: 원)

직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관리직	기능직
1호봉		3,030,000	2,561,000	2,374,000	2,344,000	2,320,000	2,296,000
2호봉		3,096,000	2,619,000	2,399,000	2,369,000	2,345,000	2,321,000
3호봉		3,166,000	2,691,000	2,424,000	2,394,000	2,370,000	2,346,000
4호봉		3,233,000	2,759,000	2,449,000	2,419,000	2,395,000	2,371,000
5호봉		3,292,000	2,823,000	2,497,000	2,444,000	2,420,000	2,396,000
6호봉		3,454,000	2,969,000	2,646,000	2,469,000	2,445,000	2,421,000
7호봉		3,544,000	3,072,000	2,740,000	2,494,000	2,470,000	2,446,000
8호봉		3,641,000	3,167,000	2,817,000	2,573,000	2,499,000	2,471,000
9호봉		3,745,000	3,263,000	2,910,000	2,666,000	2,590,000	2,496,000
10호봉		3,849,000	3,358,000	2,992,000	2,748,000	2,668,000	2,538,000
11호봉		3,942,000	3,450,000	3,093,000	2,821,000	2,759,000	2,617,000
12호봉		4,004,000	3,499,000	3,132,000	2,879,000	2,811,000	2,671,000
13호봉		4,055,000	3,550,000	3,195,000	2,953,000	2,864,000	2,714,000
14호봉		4,113,000	3,612,000	3,268,000	3,028,000	2,912,000	2,776,000
15호봉		4,170,000	3,673,000	3,357,000	3,078,000	2,966,000	2,823,000
16호봉	4,608,000	4,224,000	3,758,000	3,412,000	3,147,000	3,018,000	2,907,000
17호봉	4,661,000	4,276,000	3,820,000	3,479,000	3,190,000	3,063,000	2,961,000
18호봉	4,711,000	4,336,000	3,890,000	3,542,000	3,257,000	3,123,000	3,018,000
19호봉	4,781,000	4,388,000	3,951,000	3,603,000	3,312,000	3,178,000	3,069,000
20호봉	4,852,000	4,446,000	4,013,000	3,660,000	3,368,000	3,234,000	3,129,000
21호봉	4,945,000	4,519,000	4,070,000	3,720,000	3,418,000	3,309,000	3,199,000
22호봉	5,006,000	4,579,000	4,126,000	3,771,000	3,470,000	3,363,000	3,256,000
23호봉	5,061,000	4,635,000	4,178,000	3,820,000	3,516,000	3,414,000	3,312,000
24호봉	5,114,000	4,674,000	4,233,000	3,867,000	3,561,000	3,472,000	3,352,000
25호봉	5,165,000	4,739,000	4,285,000	3,917,000	3,605,000	3,488,000	3,404,000
26호봉	5,231,000	4,797,000	4,334,000	3,961,000	3,645,000	3,544,000	3,432,000
27호봉	5,274,000	4,856,000	4,400,000	3,997,000	3,680,000	3,601,000	3,489,000
28호봉	5,311,000	4,917,000	4,413,000	4,035,000	3,718,000	3,656,000	3,547,000
29호봉	5,374,000	4,977,000	4,454,000	4,071,000	3,754,000	3,715,000	3,604,000
30호봉	5,429,000	5,036,000	4,514,000	4,107,000	3,797,000	3,769,000	3,659,000
31호봉		5,097,000	4,573,000	4,169,000	3,858,000	3,825,000	3,717,000

ㅇ 수당 지급기준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비고
가 족 수 당	정규직원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 제외 지급인원 4인 이내	매월	배우자 40천원 기타 20천원 자녀: 첫째 30천원 둘째 70천원 셋째 이후 110천원	
시간외근무수당	소정근로시간외 (연장, 야간, 휴일) 초과하여 근무한 자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통상임금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단, 12월은 당월 지급 권고)	일반직 근무자: 최대 월 15시간 교대 근무자: 최대 월 40시간 ※ 시간외근무수당 예산범위 내 지급	시설장 제외
명절휴가비	정규직원	기본급의 120%	연2회 (설,추석)	지급시기마다 60%씩	
정액급식비	정규직원	정액 (120천원)	매월	120천원	20천원 증액
관리자 수당	상근 시설장	정액 (200천원)	매월	200천원	

- 통상임금 = 기본급 + 정액급식비 + 조정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연장·야간·휴일근로) : 보조금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경우 **법인전입금, 비지정후원금 등**을 활용하여 지급할 수 있음
 - * 법정 공휴일을 포함하는 달에 최대 시간외근무 인정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 공휴일에 근무한 시간만큼 부서별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휴일근로수당 지급 가능
- 교대근무자 : 거주시설 교대근무자(생활지도원, 요양보호사, 보육사 등), 직접 돌 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않는 자는 일반직 근무자로 간주
 - ※ 단, 중앙정부 지침(국고보조금 지원기준)에 시간외 근무수당 지원기준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거주시설 조리사, 조리원의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 최대 월 40시간
- 직원(종사자)의 출산, 휴직 등의 사유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 등을 급여로 지급가능하나, 구체적인 급여의 수준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함
- 정규직원 : 중앙정부 또는 서울시의 시설운영 관련 업무처리안내(지침, 지원계획)에 **직 제・직위・정원 등의 근거**가 있고, 시설(기관)의 운영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주 40 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종사자 ※ 정규직(正規職), 계약직(契約職) 등 고용형태 여부 불문